

M&A의 키워드 ‘기업결합심사’

독과점 폐해 막고, 자유경쟁 촉진이 목적...

공정위는 자산 처분, 가격 인상률 제한 등 시정조치 내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와 관련해 기업결합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AT&T의 T-Mobile 인수를 저지하고자 미국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 주요 경쟁당국의 집행수준이 강화되면서 M&A 거래에서 기업결합심사는 필수적인 고려 요소가 됐다. 기업은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도 등의 기업결합을 통해 비용절감·사업확장·구조조정·경영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한편 기업결합을 통해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수도 있고,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감소로 인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거나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도 있다. 이에 주요 경쟁당국은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위해 기업결합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는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각기 2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2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외국회사 간의 기업결합이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이 된다. 가령 세계 2, 3위의 철광석 공급업체인 리오티んと BHP빌리턴은 지난해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했으나 한국·일본 등의 경쟁당국에서 엄격히 심사할 움직임을 보이자 거래를 자진 철회한 사례가 있다.

기업결합 신고가 제출되면 공정위는 당사자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됐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관련 상품시장 및 지역시장을 확정하는 다음 기업결합의 유형별로 시장점유율, 인접시장, 신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해외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단독 혹은 공동행위 가능성, 시장 봉쇄효과, 잠재적 경쟁의 저해 가능성도 중점 고려 대상이다. 관련 시장을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따라 시장집중도가 달라지므로 실무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 관련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구글 본사

상 시장확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설비가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으면 규제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회복, 자산의 처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가격 인상률 제한, 경쟁사업자에 대한 설비접근 허용 등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코리아 인수 시 4개 지역 지점의 매각명령이 내려졌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시 유무선결합상품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 제한 및 이행상황의 분기별 보고

의무가 부여된 사례가 있다.

기업결합신고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며,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한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업결합심사로 인한 투자결정의 불확실성을 피하자면 기업결합계획에 대한 임의적인 사전심사를 신청, 법 위반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여러 나라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미국·EU·중국 등의 경쟁당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현행 기업결합신고제도는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기업결합일을 기준으로 사전신고와 사후신고로 나뉘어 운영한다. 기업결합이 실행된 이후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를 받아 심사를 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후 30일 내지 120일 기간에 심사하는데 관련 회사들과 사전 협의를 충실히 진행해 심사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